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보

제630호 2019. 3. 14.(목)

선람	기관의장

조 례

남해군조례 제2362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남해군조례 제2363호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남해군조례 제2364호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9
남해군조례 제2365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남해군조례 제2366호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 14
남해군조례 제2367호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
남해군조례 제2368호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남해군조례 제2369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남해군조례 제2370호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 ····· 32
남해군조례 제2371호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남해군조례 제2372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남해군조례 제2373호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48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42
남해군규칙 제1149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5
남해군규칙 제1150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7

고 시

제2019 - 2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9
제2019 - 30호 도로명 주소 고시 ····· 53
제2019 - 32호 서면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 55

공 고

제2019 - 276호 북변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58
제2019 - 298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68
제2019 - 317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73
제2019 - 322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8
제2019 - 336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82
제2019 - 351호 공인 등록 공고 ····· 91
제2019 - 364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93
제2019 - 365호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98
제2019 - 372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103
제2019 - 373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112
제2019 - 386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26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62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

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남해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는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63호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부위원장은 사무주관 담당 실·과·단·소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민원봉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이 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64호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65호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 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영업장소의 신청) ①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희망자의 수요, 관계법령의 허용행위 및 인·허가 가능여부,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66호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생·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 해 군 공 보
(20) 제 630 호 2018년 3월 14일

남해군 조례 제2367호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이념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 결과물들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을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사업
3.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남해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주민복지과장, 지역활성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인 기관의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불참, 질병 등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남해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제20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21조(위탁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표창)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368호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피해상황, 재정여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

2. 장례·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3. 그 밖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69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3에 따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 한다.

별표 4를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조례 제2370호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남해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군의 본청 · 군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읍 · 면, 출자 · 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해 지역어의 발굴 및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 ·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남해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파악이 어려운 낱말이나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사용 금지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금지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진흥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업무 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71호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72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①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373호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된”을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으로 하고, “재산과 생명”을 “생명과 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호남 교류 및 소방 활동 행사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48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신과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8. 군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공무원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149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5조 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8조 제2항의 인수증은 별제 1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과 별지 제9호서식(을) 중 “부군수”를 각각 “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150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상업체 선정 및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업 완료 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

2.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6호서식)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2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88,905.7	증)650	579,489,55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7,341.7	증)650	357,677,991.7	61.72	
도시지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거지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업지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리지역	소계		136,569,878.7	증)650	136,570,528.7	23.56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	-	53,325,240	9.20	
	계획관리지역		36,008,586.6	증)650	36,009,236.6	6.21	
농림지역			153,977,522.0	-	153,977,522.0	26.57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주)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2018.7.5.)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남해군 고시 제2018-109호(2018.07.12.)로 고시된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	계획관리지역	650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설리유원지	미조면 송정리 산361번지 일대	92,503	증) 650	93,153	남해군 고시 2018-47 (18.04.05.)	계획관리지역

나. 유원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설리 유원지	○ 경미한 변경 - 기정 : 92,503㎡ - 변경 : 93,153㎡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 설리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시설 면적 변경

다.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비 고
40% 이하	100% 이하	65m 이하	

3.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92,503	93,153	증) 650	100.0	
휴양시설	20,717	17,516	감) 3,201	18.8	
특수시설	8,663	13,143	증) 4,480	14.1	
관리시설	19,906	11,855	감) 8,051	12.7	
편익시설	1,035	1,222	증) 187	1.3	
녹지지설	42,182	49,417	증) 7,235	53.1	

나. 시설별 조서

시설명	시설번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92,503	93,153	22,265	20,454	
휴양시설	-	-	20,717	17,516	21,616	12,300	
숙박시설(타 워)	1	1	3,787	5,624	13,638	7,857	
숙박시설(빌리지1)	2	2	1,640	4,438	1,056	1,473	
숙박시설(빌리지2)	3	3	8,705	4,307	4,258	1,451	
숙박시설(빌리지3)	4	4	6,585	2,210	2,664	1,025	
숙박시설(빌리지4)	-	5	-	937	-	494	
특수시설	-	-	8,663	13,143	17	5,142	
광장1	5	6	3,504	5,860	-	4,149	
광장2	6	7	2,231	3,911	-	731	
광장3	7	8	1,429	3,372	-	262	
광장4	8	-	1,499	-	17	-	
관리시설	-	-	19,906	11,855	44	791	
도로	9	9	11,663	10,751	22	-	
주차장	10	10	7,193	221	-	-	
가스저장소	11	-	1,050	-	22	-	
기타	-	11	-	883	-	791	
편익시설	-	-	1,035	1,222	584	2,221	
카페동	12	12	682	795	480	2,155	
전망대	13	13	353	427	104	66	
녹지시설	-	-	42,182	49,417	-	-	
원형녹지	14	14	24,631	24,191	-	-	
조성녹지	15	15	17,551	25,226	-	-	

남해군 고시 제2019-3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5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1042-2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3.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리 1042-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86-40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20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2956-180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31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03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705-1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40-20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22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575-106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6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524-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575-104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7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626-2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8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119-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011-60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79-1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18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54-19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605-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35-2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망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12-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48	20090427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송정리(소나무 숲 위쪽에 있는 마을에 정자가 있었던 곳)로 연결되는 도로임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254-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4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1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036-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240-29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1337-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6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59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84-10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50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285번길 22	20090427	금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9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593번길 69-44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9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047-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 55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91-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270번길 31-2	20090427	두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303-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42번나길 9-1	20100915	삼이로442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변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폐 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남해군고시 제2019 - 32호

서면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0조 및「어촌어항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서면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서면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 업 목 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 치 : 남해군 서면 서상리 외 소재지 일원
4. 사 업 개 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실버복지타운 조성 : 3층, 연면적 1,285.17(본동 1,258.77, 기계실 26.40㎡)
   - 스마트 CCTV 설치(5개소)
   - 서상숲 치유쉼터 조성(바닥정비 1식, 포장공 1식, 부대공사 1식)
   - 장항숲 장수공원 조성(바닥정비 1식, 포장공 1식, 부대공사 1식)

   ○ 지역경관개선
   - 서면 중심가로 정비(포장공 1식, 보도블록 정비 1식, 부대공사 1식)
   - 안전한 수변길 조성(안전휀스 설치 L=454m)

   ○ 지역역량강화계획
   - 선진지견학 및 주민 교육 : 1식
5. 총 사 업 비 : 5,856백만원(국비 4,099, 지방비 1,757)

6. 사 업 기 간 : 2017년 ~ 2020년 (4년간)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서면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서상숲 치유공원	남해	서면	서상리	1183	1	임	6,524	6,524	
				소계		1필지	6,524	6,524	
장항숲 장수공원	남해	서면	서상리	1162	2	임	8,838	8,838	
				1174	2	임	2,136	2,136	
				소계		2필지	10,974	10,974	
서면 실버복지타운	남해	서면	서상리	521	9	대	94	94	
				521	7	대	248	248	
				707	1	대	148	148	
				708	7	답	348	348	
				521		답	835	835	
				521	2	답	26	26	
				522		답	156	156	
				523		답	211	211	
				708	6	답	13	13	
				707	23	답	1	1	
				521	10	대	5	5	
				521	1	구	171	67	
				524	2	답	359	359	
				소계		13필지	2,615	2,511	
				계		16필지	20,113	20,009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276호

북변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변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소하천(북변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제되는 사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남 해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북변천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해읍 북변리 56-4	남해읍 남변리 118-5	724	724	교량 2개소	2019. 01.01	2020. 12.31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세부내역

1.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소하천인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의 복원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북변리 일원(북변천)
   ◦ 사업량 : 소하천정비 L=0.57km
   ◦ 사업비 : 10,818백만원(용지보상비 2,750백만원 포함)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남해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4. 착공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9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6. 준공된 소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남해군청(안전총괄과)
7.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 해당없음

8. 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북변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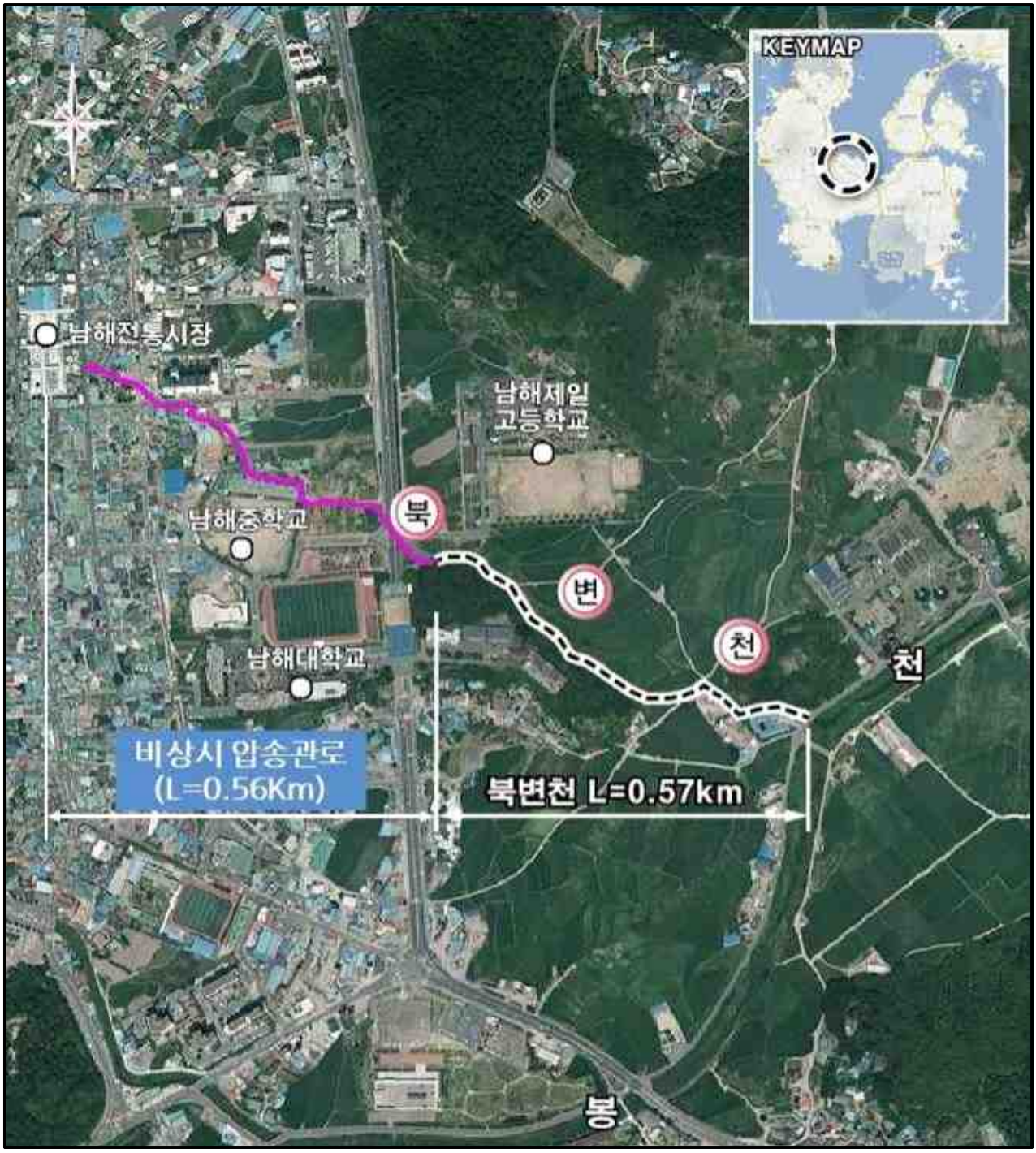

9. 실시설계도서 : 별첨 설계도서 참조

10.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비 고
사업비	10,818	5,409	5,409	

11.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열람장소 :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8. ~

◦ 보상절차 및 방법 :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출평균치

12.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790	남해읍 남변리 93-1	남해읍 남변리 644	일반도로	-	경상남도 고시 제1993-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791	남해읍 남변리 93-1	남해읍 남변리 644	일반도로	-		도시지역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3호선	소로1-3호선	○ 선형변경 L = 790m → 791m	○ 북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군계획시설(도로)을 변경하고자 함

나)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7	북변천	소하천	남해읍 북변리 362-8	남해읍 남변리 118-2	-	0.57	3~10	6,627	남해군 고시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27	북변천	소하천	남해읍 북변리 362-8	남해읍 남변리 118-2	-	0.57	10~12	12,07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북변천	○ 폭원 및 면적변경(증5,445㎡) B = 3~10m → 10~12m A = 6,627㎡ → 12,070㎡	○ 북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군계획시설(북변천)을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남변리 일원(북변천)

나)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하천, 도로)사업
- 명칭 :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다)사업면적

- 북변천 : 6,627㎡ → 12,070㎡ (증 5,443㎡)
- 도로(소로1-3호선) : 1,447㎡

라)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남해군수(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12)

마)사업기간 :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일 ~ 2020. 12. 31.

바)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생략

13. 기타사항

◦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055-860-3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지조서 총괄 집계표

구 분	편 입 용 지						비 고
	총 계		북변소하천		소로1-3호선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57	13,547	47	12,070	10	1,477	
전	1	12	1	12			
답	28	4,883	25	4,798	3	85	
임야	3	211	2	191	1	20	
대지	-	-					
도로	9	3,972	5	3,311	4	661	
하천	12	3,548	11	2,856	1	692	
구거	1	40	1	40			
제방	-	-					
유 원 지	-	-					
유지	-	-					
과수원	-	-					
묘지	-	-					
목장	-	-					
잡종지	-	-					
철도용지	-	-					
수도	-	-					
공장	-	-					
학교용지	-	-					
창고용지	3	881	2	862	1	19	
기타	-	-					

2019년 3월 14일 목 원 군 보 제 630 호 (63)

편입용지 집계표(북변소하천)

구 분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47 / 12,070	5 / 3,230	26 / 6,173	16 / 2,667	
전	1 / 12	/	/	1 / 12	
답	25 / 4,798	/	17 / 3,228	8 / 1,570	
임 야	2 / 191	/	/	2 / 191	
대 지	/	/	/	/	
도 로	5 / 3,311	4 / 3,190	1 / 121	/	
하 천	11 / 2,856	/	8 / 2,824	3 / 32	
구 거	1 / 40	1 / 40	/	/	
제 방	/	/	/	/	
유 원 지	/	/	/	/	
유 지	/	/	/	/	
과 수 원	/	/	/	/	
묘 지	/	/	/	/	
목 장	/	/	/	/	
잡 종 지	/	/	/	/	
철도용지	/	/	/	/	
수 도	/	/	/	/	
공 장	/	/	/	/	
학교용지	/	/	/	/	
창고용지	2 / 862	/	/	2 / 862	
기 타	/	/	/	/	

편 입 토 지 조 서(북변소하천)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소 유 권 자		비 고
	군	면	리				면 적	토 지 대 장		
	(시)	(읍)	(동)			(㎡)	(㎡)	성 명	주 소	
1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617	도	321.0	177	국(국토교통부)		
2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6-4	천	873.0	778	공(남해군)		
3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6-7	답	14.0	14	공(남해군)		
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6-9	답	745.0	745	공(남해군)		
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1	답	863.0	175	공(남해군)		
6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0-2	답	24.0	24	공(남해군)		
7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0	답	451.0	451	공(남해군)		
8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3-1	천	1,624.0	1,624	공(남해군)		
9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9	답	614.0	508	공(남해군)		
10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9-2	답	55.0	55	공(남해군)		
11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3	도	11,436.0	2,953	국(국토교통부)		
12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8-4	답	3.0	3	공(남해군)		
13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8	답	669.0	202	공(남해군)		
1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8-5	답	6.0	6	공(남해군)		
1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8-1	답	918.0	403	공(남해군)		
16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4-2	답	1,201.0	56	공(남해군)		
17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4-1	답	1,290.0	93	공(남해군)		
18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58-5	답	499.0	499	공(남해군)		
19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3-2	답	146.0	146	공(남해군)		
20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3	답	1,355.0	537	공(남해군)		
21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6-2	답	281.0	281	공(남해군)		
22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6-1	천	13.0	13	공(남해군)		
23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7-2	천	96.0	96	공(남해군)		
24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7-4	창	169.0	169	공(남해군)		
25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7-6	답	129.0	129	공(남해군)		
26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7-5	답	142.0	142	공(남해군)		
27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4	천	5.0	5	공(남해군)		
28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10	창	712.0	693	공(남해군)		
29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2	도	409.0	121	공(남해군)		
30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6	답	9.0	7	공(남해군)		
31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614-5	구	720.0	40	국(농림축산식품부)		
32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6-4	답	30.0	30	공(남해군)		
33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6-3	답	14.0	14	공(남해군)		
34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4-2	답	156.0	52	공(남해군)		
35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4-1	천	97.0	97	공(남해군)		
36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4-3	답	195.0	195	공(남해군)		
37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4	전	3,512.0	12	정*오 외 7명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외 7개	
38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12	임	59.0	59	감*주 외 2명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39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9	천	15.0	15	감*주 외 2명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40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8	천	3.0	3	감*주 외 2명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41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3-1	천	191.0	191	공(남해군)		
42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13	임	132.0	132	감*주 외 2명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43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7	천	14.0	14	감*주 외 2명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44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3-2	답	31.0	31	공(남해군)		
45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3-24	도	29.0	29	국(국토교통부)		
46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5	천	20.0	20	공(남해군)		
47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3-25	도	69.0	31	국(국토교통부)		
계							12,070			

편입용지 집계표(소로1-3호선)

구 분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10	/	1,477	3	/	837	3	/	588	4	/	52	
전		/			/			/			/		
답	3	/	85		/		1	/	72	2	/	13	
임 야	1	/	20		/			/		1	/	20	
대 지		/			/			/			/		
도 로	4	/	661	2	/	145	2	/	516		/		
하 천	1	/	692	1	/	692		/			/		
구 거		/			/			/			/		
제 방		/			/			/			/		
유 원 지		/			/			/			/		
유 지		/			/			/			/		
과 수 원		/			/			/			/		
묘 지		/			/			/			/		
목 장		/			/			/			/		
잡 종 지		/			/			/			/		
철도용지		/			/			/			/		
수 도		/			/			/			/		
공 장		/			/			/			/		
학교용지		/			/			/			/		
창고용지	1	/	19		/			/		1	/	19	
기 타		/			/			/			/		

편 입 토 지 조 서(소로1-3호선)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소 유 권 자		비 고
	군	면	리				면 적	토 지 대 장		
	(시)	(읍)	(동)			(㎡)	(㎡)	성 명	주 소	
1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10	창	712.0	19	공(남해군)		
2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7	답	156.0	72	공(남해군)		
3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8	답	95.0	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2	도	409.0	206	공(남해군)		
5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6	답	9.0	2	공(남해군)		
6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5-1	천	41,534.0	692	국(국토교통부)		
7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3-26	도	107.0	107	국(국토교통부)		
8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643-25	도	69.0	38	국(국토교통부)		
9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14	임	20.0	20	감*주 외 2명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10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1-1	도	442.0	310	공(남해군)		
계							1,477			

2019년 3월 14일 남해군보 제 630 호 (67)

남해군 공고 제2019 - 298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시기 도래 등의 사유로 『남해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하고, 일반회계 세부사업로 편성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에 한해 보상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해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보상업무 계속 추진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11,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전화 055-860-34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남해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남해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2018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남해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현 행 조 례]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세입) 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의 전입금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 매수 보상금 및 지장물 철거 보상금
2. 제1호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경비
3. 그 밖에 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남해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317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2. 제정이유

현행 「남해군 보건소 수가 조례」 및 「남해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가 제정된지 30년 이상이 되어 정책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 정책에 맞는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용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 조례의 근거와 목적 등을 규정

나. 제2조 정의

- 공공보건기관의 종류, 진료비, 진료수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

다. 제3조 급여대상 진료의 수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징수

라. 제4조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 비급여 대상의 진료, 예방접종 수수료, 인플루엔자 접종비의 수가 결정

마. 제5조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바. 제6조 그 밖의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수가를 정하는 경우

사. 제7조 본인부담금의 면제
- 만65세 이상 환자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아. 제8조 수수료 면제
- 감염병 예방·확산방지, 수사의 목적, 타 법령에서 면제 기준이 있는 경우

자. 제9조~제10조 납부 및 추가징수
- 현금, 남해화폐(화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
- 허위 사실로 감면받은 경우 추가징수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3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 보건소(보건행정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702~6, 팩스 055-860-87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보건소 보건행정팀(전화 055-860-8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②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③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진료행위 마다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

④ 본인부담금이란 공공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공공보건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 군수는 공공보건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제4조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군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불소 도포, 골다공증검사 등)의 수가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2. 예방접종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주사료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징수한다.

3.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구입하는 약품의 단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제2항의 예방접종 수수료와 구입 약품 단가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조(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군수는 진료수가 이외의 각종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과 같이 징수한다.

제6조(그 밖의 진료비) 군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7조(본인부담금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료시점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5.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
9. 그밖에 무의탁자 진료, 각종 행사 및 해수욕장 의료지원 시 진료, 방문사업 진료 등

제8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및 시험 · 검사 등
2.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실 증빙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시험 · 검사 등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징수 및 납부) 군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그 날에 징수하며,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남해화폐(화전)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남해군 보건소 수가조례 및 남해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비급여 진료수가

항 목	단 위	진료수가
불소도포	전악	3,300원
골다공증 검사	1회	8,000원

남해군 공고 제2019-322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폐지된 「호적법」 상 개념인 '본적'을 신설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정비권고 용어를 순화함에 따라 법체계 및 개념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 제4조제2항 중 "공부"를 "공적 장부"로 변경
- 제5조제2항 중 "요금계기"를 "요금 계기(計器)"로 변경
- 제6조 문장정비(중복주어 "수수료는" 삭제)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 년 3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넌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82,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전화 055-860-3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부”를 “공적 장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요금계기”를 “요금 계기(計器)”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생 략)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방법)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② 요금 계기(計器)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336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남 해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덕신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12-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2	2,050	3,352(양안)	교량 8개소 복개 65(m) 낙차공 19개소	2019.03.	2022.12.	재해예방	토지및지장물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

1. 시행계획의 개요

소하천명	사업 개요								사업비(백만원)	사업효과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덕신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212-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2	2,050	3,352(양안)	교량 8개소 복개 65(m) 낙차공19 개소	2019.03.	2022.12.	10,700	재해예방

2.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소하천의 정비와 관리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 공 사 개 요

○ 하천연장 : L=2,050m, 축제 및 호안 : 양안 L=3,390m, A=11,529㎡
(전석쌓기) 합성형라멘교 : 5개소 , BOX형라멘교 :3개소,
복개구간 :6 5 m, 보 : 19개소 , 낙차공 : 2개소

○ 축제공

- 흙쌓기 : 24,038㎥, - 순성토 : 7,397㎥
- 흙깍기 : 17,121㎥ - 터파기 : 26,352㎥
- 되메우기 : 8,154㎥

○ 호안공

- 전석쌓기(제외지) : L=3,354m A=11,427㎡
- 전석쌓기(제내지) : L=36m A=102㎡

○ 구조물공
- 합성형 라멘교 : 5개소 - BOX형 라멘교 : 3개소
- 복개구간 : 65m - 수로암거 : 22m

○ 하상보호공
- 하상보호 : 107㎡ - 보 : 19개소 - 낙차공 : 2개소
- 수문 :3개소 - 농용수로 연결관 : 57m

○ 배수공
- 파형강관 설치(각종) : 295m - 집수정 설치(각종) : 26개소
- 우수받이 설치(각종) : 8개소 - 우수맨홀 설치 : 2개소
- U형측구 설치 : 661m, L형측구 설치 : 270m, J형측구 설치 : 16m
- 문비 설치 : 19개소

○ 상수공
- 상수관로(내충격수도관, D100) : 65m
- 상수관로(내충격수도관, D75) : 667m
- 상수관로(수도용PE관,D50~16) : 558m

○ 포장공
- 아스콘포장(T=45.0cm) : 6,099㎡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T=5.0cm) : 2,478㎡
- 콘크리트포장(T=20cm) : 3,182㎡

○ 친수공
- 하천진입계단 설치 : 2개소

○ 부대시설공
- 차선도색 : 821㎡ - 가드레일 설치 : 2,268㎡
- 교량난간 설치 : 278m

○ 부대공
- 중기운반 : 1식 - 각종운반 : 1식
- 가도설치 및 교통처리계획 : 4개소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 예정일 : 2019년 3월
- 준공 예정일 : 2022년 12월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 붙임1 참조

-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사. 실시설계도서 : 남해군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비치

아. 예정공정표 : 열람서류 참조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단위:백만원)

공 종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총사업비	10,700	320	496	3300	3300	3284	
국 비	5,350	160	248	1650	1650	1642	
군 비	5,350	160	248	1650	1650	1642	

차.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소하천 부속물에 대하여는 소하천 관리청(남해군 안전총괄과)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교량 및 기타 기반시설은 담당부서로 시설물 이관

카. 발생 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 해당없음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파.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3. 공람기간 : 2019. 3. 6. ~ 2019. 3. 21.

4. 공람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4)

5. 열람서류 : 실시설계도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055-860-3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 동리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43	구	73,243.0	18,855.0	54,388.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7	답	545.0	76.0	469.0	김태0	설천면 덕신리				
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9	답	1,792.0	114.0	1,678.0	정영0	설천면 덕신리				
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8	답	783.0	182.0	601.0	김태0	설천면 덕신리				
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5-2	답	3,425.0	172.0	3,253.0	정기0	설천면 덕신리				
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3	답	1,230.0	257.0	973.0	김태0	설천면 덕신리				
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4	답	248.0	40.0	208.0	김태0	설천면 덕신리				
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5-1	답	192.0	192.0		김대0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5-2	답	570.0	290.0	280.0	한용0	설천면 덕신리				
1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6-4	도	488.0	173.0	315.0	공	남해군				
1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6	답	26.0	26.0		국	기획재정부				
1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7	답	1,278.0	100.0	1,178.0	김태0	설천면 덕신리				
1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7-1	구	117.0	117.0		공	남해군				
1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6-1	구	108.0	108.0		공	남해군				
1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6	답	500.0	242.0	258.0	김태0	설천면 덕신리				
1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8	도	1,778.0	368.0	1,410.0	공	남해군				
1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95-2	답	380.0	14.0	366.0	김태0	설천면 덕신리				
1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60	도	56.0	35.0	21.0	국	국토교통부				
1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50	도	4,536.0	44.0	4,492.0	국	국토교통부				
2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83	답	803.0	3.0	800.0	한성0	설천면 덕신리				
2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709	도	106.0	106.0		공	남해군				
2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9	답	1,451.0	316.0	1,135.0	한성0	설천면 덕신리				
2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8	답	401.0	138.0	263.0	김대0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40번길				
2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7	답	1,118.0	133.0	985.0	김대0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40번길				
2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6	답	1,711.0	302.0	1,409.0	김대0	경남 김해시 번화1로	주식회사비지에프히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삼성동)	근저당	
2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80	답	922.0	367.0	555.0	김대0	경남 김해시 번화1로				
2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5	답	493.0	172.0	321.0	김홍0	설천면 덕신리				
2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4	답	526.0	108.0	418.0	김홍0	설천면 덕신리				
2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48-1	답	1,231.0	175.0	1,056.0	윤수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남해신용협동조합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길 5	근저당	
3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3	답	1,739.0	253.0	1,486.0	김순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3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72	답	859.0	95.0	764.0	김홍0	설천면 덕신리				
3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2	답	2,377.0	480.0	1,897.0	김승0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3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4	도	3,971.0	709.0	3,262.0	공	남해군				
3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3	답	803.0	335.0	468.0	김창0	설천면 덕신리				
3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55	답	191.0	191.0		박종0	설천면 덕신리				
3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22-2	답	44.0	15.0	29.0	정선0	설천면 덕신리				
3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23-3	답	698.0	5.0	693.0	정권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3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22	창	538.0	162.0	376.0	덕신마을회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39				
3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59	도	2,333.0	77.0	2,256.0	국	국토교통부				
4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20	도	798.0	635.0	163.0	공	남해군				
4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17	답	476.0	34.0	442.0	김동0	설천면 덕신리				
4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19-3	답	570.0	45.0	525.0	정갑0	부산 사상구 주례동				
4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53	도	4,537.0	158.0	4,379.0	국	국토교통부				
4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619-1	도	576.0	455.0	121.0	공	남해군				
4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4	대	476.0	476.0		정춘0	설천면 덕신리	성영0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가압류	
4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1	전	93.0	93.0		김길0	설천면 덕신리				
4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4	대	455.0	455.0		정순0	설천면 덕신리				
4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4	임	397.0	220.0	177.0	국	기획재정부				
4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2	대	313.0	313.0		정선0	설천면 창남로				
5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6	대	27.0	27.0		정선0	설천면 창남로				
5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5	대	25.0	25.0		한용0	설천면 덕신리				
5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3-3	대	356.0	356.0		한용0	설천면 덕신리				
5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08-1	과	747.0	24.0	723.0	김근0	설천면 덕신리	설천농업협동조합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754-3	근저당	
5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6	답	1,927.0	414.0	1,513.0	김채0	설천면 덕신리				

편 입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 동리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5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09	답	1,345.0	221.0	1,124.0	김성0	설천면 창남로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남해군청출장소)	근저당	
5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09-1	도	202.0	28.0	174.0	한덕0	부산 영도구 신선동				
5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2-1	도	100.0	49.0	51.0	박을0	설천면 덕신리				
5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03	도	114.2	44.0	70.2	국	농림축산식품부				
5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3	답	1,376.3	140.0	1,236.3	지희0	설천면 창남로	새남해농업협동조합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40	근저당	
6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4	답	1,517.1	202.0	1,315.1	지영0	설천면 노량리				
6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6-1	도	309.0	309.0		공	남해군				
6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5	답	1,547.9	232.0	1,315.9	김길0	설천면 덕신리				
6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2	답	1,526.1	490.0	1,036.1	김평0	설천면 덕신리	남해축산업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22-5	근저당	
6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6	답	1,396.2	202.0	1,194.2	김생0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6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7	답	1,503.3	246.0	1,257.3	강승0	설천면 덕신리				
6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6	구	356.4	332.0	24.4	국	농림축산식품부				
6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8	답	2,549.5	363.0	2,186.5	지진0	설천면 덕신리				
6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02	구	577.1	146.0	431.1	국	농림축산식품부				
6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29	답	2,523.6	383.0	2,140.6	정계0	설천면 덕신리				
7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25-3	도	91.0	91.0		공	남해군				
7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1	답	2,338.3	767.0	1,571.3	지국0	설천면 노량리				
7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0	답	3041	418	2623	지창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지치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7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4	도	2,802.1	91.0	2,711.1	국	농림축산식품부				
7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7	답	2,457.2	5.0	2,452.2	지문0	설천면 노량리				
7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00	도	1,543.5	109.0	1,434.5	국	농림축산식품부				
7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901	구	234.4	41.0	193.4	국	농림축산식품부				
7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37	도	20.0	20.0		김덕0	설천면 덕신리				
7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1	답	3,354.0	465.0	2,889.0	김석0	설천면 덕신리				
7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33	도	23.0	23.0		김덕0	설천면 덕신리				
8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2	답	1,672.7	208.0	1,464.7	정기0	설천면 창남로				
8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47	도	421.0	421.0		공	남해군				
8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3	답	1,915.7	237.0	1,678.7	박도0	창원시 남양동				
8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6	답	2,002.9	631.0	1,371.9	지국0	설천면 노량리 595				
8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34	도	50.0	50.0		김덕0	설천면 덕신리 576				
8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6	구	591.4	84.0	507.4	국	농림축산식품부				
8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5	도	1,360.2	510.0	850.2	국	농림축산식품부				
8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5	답	631.2	102.0	529.2	김종0	설천면 덕신리				
8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4	답	841.4	136.0	705.4	김종0	설천면 덕신리				
8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3	답	966.4	136.0	830.4	서인0	설천면 덕신리				
9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2	답	999.1	140.0	859.1	정찬0	부산 남구 용호동				
9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1	답	1,725.2	298.0	1,427.2	김연0	설천면 덕신리				
9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4	답	3,272.8	416.0	2,856.8	강대0	설천면 덕신리				
9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35	도	17.0	17.0		김동0	설천면 덕신리				
9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5	답	1,328.5	153.0	1,175.5	강대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9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6	답	1,941.0	230.0	1,711.0	강경0	설천면 덕신리				
9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17-36	도	93.0	93.0		공	남해군				
9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7	답	3,008.7	366.0	2,642.7	지용0	설천면 노량리				
9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8	답	986.2	123.0	863.2	정상0	설천면 노량리				
9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39	답	1,901.7	236.0	1,665.7	지장0	설천면 노량리				
10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30-2	도	93.0	93.0		공	남해군				
10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1	답	1,363.7	170.0	1,193.7	지정0	설천면 노량리				
10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9	답	1,806.8	742.0	1,064.8	박정0	설천면 노량리				
10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3	답	1,085.1	179.0	906.1	김수0	설천면 노량리	남해군		등기촉탁	
10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140-69	도	26.0	26.0		김덕0	설천면 노량리				
10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4	답	865.3	181.0	684.3	정영0	설천면 덕신리				
10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5	답	567.5	132.0	435.5	정영0	설천면 덕신리				

편 입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대 장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10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3-2	도	23.0	23.0		정익0	설천면 노량리				
10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6	답	1512.1	433	1079.1	박철0	부산 사하구 신평동				
							김덕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0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7	구	1,420.5	893.0	527.5	국	농림축산식품부				
11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70	답	595.0	3.0	592.0	박정0	설천면 노량리				
11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94	구	918.9	73.0	845.9	국	농림축산식품부				
11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4	답	288.0	224.0	64.0	유재0	설천면 노량리	설천농업협동조합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754-3	근저당권, 지상권	
11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산254	임	14,380.0	633.0	13,747.0	김수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11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53-3	도	669.0	669.0		국	국토교통부				
11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3-3	도	194.0	194.0		공	남해군				
11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7	답	2,516.5	1,188.0	1,328.5	서정0	설천면 덕신리	악양농업협동조합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642	근저당권, 지상권	
11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5-4	도	30.0	30.0		지덕0	설천면 노량리				
11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5-3	도	63.0	63.0		정재0	설천면 노량리				
11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2	도	1,482.3	94.0	1,388.3	국	농림축산식품부				
12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6-2	도	36.0	36.0		정삼0	설천면 노량리				
12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8	답	2400.7	250	2150.7	김규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김규0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김봉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분압류	
12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68	구	2,410.8	697.0	1,713.8	국	농림축산식품부				
12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7-2	도	117	117		김규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김규0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김봉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12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49	답	2,562.0	435.0	2,127.0	지효0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12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0	답	354.0	354.0		정찬0	설천면 노량리				
12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산255-1	임	4,013.0	48.0	3,965.0	지진0	대구 동구 불로동	북부산 세무서		압류	
12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0	도	30.0	30.0		국	국토교통부				
12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산255-4	임	609.0	34.0	575.0	김주0	설천면 덕신리				
12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0	답	1,177.6	203.0	974.6	김점0	설천면 노량리				
13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71-2	도	69.0	69.0		공	남해군				
13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1	답	1,357.3	217.0	1,140.3	강춘0	설천면 창남로				
13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74-2	도	33.0	33.0		공	남해군				
13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2	답	1,292.7	199.0	1,093.7	지문0	설천면 노량리				
13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3	답	1,563.1	258.0	1,305.1	김수0	부산 서구 아미동				
13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7	답	1,894.0	900.0	994.0	정찬0	설천면 노량리				미등기
13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75-2	도	10.0	10.0		공	남해군				
13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4	답	2062.6	372	1690.6	허덕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허영0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13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67-3	도	387.0	387.0		공	남해군				
13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855	답	1,533.6	530.0	1,003.6	정덕0	설천면 노량리				
14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5-4	도	43.0	43.0		정덕0	설천면 노량리				
14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7-1	답	119.0	119.0		정찬0	설천면 노량리				미등기
14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6	답	2,082.0	70.0	2,012.0	정찬0	설천면 노량리				
14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405	답	2,785.0	110.0	2,675.0	정종0	설천면 노량리				
14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5	답	1,236.0	298.0	938.0	강경0	설천면 덕신리				
14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20	답	139.0	139.0		강경0	설천면 덕신리				
14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2-6	도	494.0	494.0		국	국토해양부				
14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7	답	551.0	28.0	523.0	강대0	설천면 덕신리				
14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24	답	4.0	4.0		국	국토해양부				
14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2-13	도	1,651.0	18.0	1,633.0	국	국토해양부				
15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29	도	36.0	2.0	34.0	국	국토해양부				
15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16	도	14.0	14.0		이실0	설천면 덕신리				
15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2	전	331.0	203.0	128.0	김수0	진해시 용원동				
15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5-5	도	48.0	48.0		국	국토교통부				
15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4-7	도	583.0	145.0	438.0	정찬0	노량리				
15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4-8	도	60.0	60.0		국	국토교통부				

편 입 용 지 조 서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읍면 동리			대장	편입	잔여	성명	주소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15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0-2	도	1,960.0	790.0	1,170.0	국	국토교통부				
15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84-1	전	792.0	131.0	661.0	정찬0	설천면 노량리				
15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10	답	620.0	120.0	500.0	고학0	부산 동래구 사직동				
15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9	답	1,609.0	195.0	1,414.0	고학0	부산 동래구 사직동				
16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8	전	615.0	185.0	430.0	강대0	설천면 덕신리				
16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1	천	717.0	717.0		서정0					미등기
16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9	전	1,213.0	190.0	1,023.0	김상0	남해읍 아산리				
16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4-10	답	2725	147	2578	정광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정만0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정인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6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1-1	제	592.0	499.0	9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1-3	제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96-62	답	799.0	28.0	771.0	국	국토해양부				
16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1-2	제	37.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771	제	4,149.0	338.0	3,8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9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8	답	790.0	145.0	645.0	지민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7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32	답	72.0	18.0	54.0	국	국토해양부				
171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7	답	701.0	66.0	635.0	국	국토해양부				
172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40	제	209.0	209.0		국	국토교통부				
173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31	답	748.0	60.0	688.0	국	국토해양부				
174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6	답	515.0	40.0	475.0	국	국토해양부				
175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49	제	118.0	118.0		국	국토교통부				
176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43	유	327.0	54.0	273.0	국	국토해양부				
177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25	제	1,011.0	289.0	722.0	국	국토해양부				
178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1351-2	창	1,451.0	137.0	1,314.0	김분0	설천면 덕신리				
합 계				269,737.4	56,833.0	212,904.4						

남해군공고 제2019-351 호

공인 등록 공고

남해군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을 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사용 개시일 : 2019. 3. 1.
2.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전용 공인 등록
3. 등록 공인명 · 인영

공 인 명	인 영	규 격	구분	관리부서
남해읍장인 통합민원전용		2.1cm정방형 한글 전서체	등록	남해읍
이동면장인 통합민원전용		2.1cm정방형 한글 전서체	등록	이동면
설천면장인 통합민원전용		2.1cm정방형 한글 전서체	등록	설천면

(92) 제 630 호

남 해 군 공 보

2018년 3월 14일

공 인 명	인 영	규 격	구분	관리부서
남면장인 통합민원전용		2.1cm정방형 한글 전서체	등록	남면
고현면장인 통합민원전용		2.1cm정방형 한글 전서체	등록	고현면

끝.

2019년 3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고 제 2019-364 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남해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문단의 기능(안 제2조)
나. 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촉(안 제4조)
라. 분과자문단 운영(안 제7조)
- 비상설로 필요시 구성 운영
마.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안 제8조)
바. 간사와 서기(안 제9조)
- 전체회의 : 간사(기획예산담당관), 서기(정책기획팀장)
- 분과위원회 : 간사(소관분야 업무담당팀장), 서기(업무담당자)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3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2,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남해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
3.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석사급 이상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 ①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상설 분과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부서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기획팀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자문단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자문단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365호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제5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3월 28일까지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2,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군민소통팀(전화 055-860-3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해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관광·체육·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과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회원
4. 남해군의회 의원
5.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자문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372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

2) 규 모 :

-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 A=67,860㎡
-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 A=81,142㎡

나.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붙임1>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별첨>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4. 공람·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2가지 방법 중 선택)
1) 남해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단체(개인)는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88,905.7	-	579,488,905.70	100.00	
육지부합계			357,677,341.7	-	357,677,341.70	61.72	
도시지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0	2.03	
	주거지역	소계	1,264,968.0	-	1,264,968.0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0	0.01	
	상업지역	소계	183,713.0	-	183,713.0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0	1.7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0	0.44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0	1.34	
관리지역	소계		136,569,878.7	증)81,142.0	136,651,020.70	23.58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0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	-	53,325,240.00	9.20	
	계획관리지역		36,008,586.6	증)81,142.0	36,089,728.60	6.23	
농림지역			153,977,522.0	감)81,142.0	153,896,380.00	26.56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	38.28	

주) 기정은 남해군 고시 제2018-109호(2018.7.12.)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81,142	○ 대상지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	-	증)67,860	67,8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 = 67,860㎡	○ 이동면 무림리 일원에 소재한 기수지역과 해안숲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단순한 통과거점이었던 이동면을 지속적인 체험 프로그램 수요 확보를 통한 숙박, 체험, 교육,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형 복합관광지인 에코촌을 조성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합계	67,860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22,015	32.4	
힐링숙박동	10,730	15.8	
별천지캠핑장	11,285	16.6	
관광편익시설용지	11,592	17.1	
에코센터 및 체험관	5,558	8.2	
생태학습장	6,034	8.9	
녹지용지	23,242	34.3	
완충녹지	10,764	15.9	
경관녹지	12,478	18.4	
공공시설용지	11,011	16.2	
주차장	5,094	7.5	
도로	5,917	8.7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853	5,917				1	452	1,097	1	401	4,827
중로	1	401	4,827							1	401	4,827
소로	1	452	1090				1	452	1090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401	소로2-106 (무림리 1164-125)	동측구역계 (무림리 1164-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6	8	집산도로	8,864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도로		남해군고시 제2017-6호(2017.1.25.)	
변경	소로	2	106	8~12	집산도로	8,864 (452)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도로			일부구간 노폭확폭

주) ( ) 안의 연장은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중로3-A호선	○ 노선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401m	○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도로 신설 및 변경
소로2-106호선	소로2-106호선	○ 일부구간 노폭확폭 - 폭원 = 8m → 8~12m, - 연장 = 452m (지구단위구역내 연장임)	

나)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에코촌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1164-102 일원	-	증) 5,094	5,094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에코촌 주차장	○ 신설 - A = 5,094㎡	○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함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19 일원	-	증) 10,764	10,764		
신설	B	녹지	경관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23 일원	-	증) 12,478	12,478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녹지	○ 신설 - 완충녹지 - A = 10,764㎡	○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신설에 따라 주변 지역과의 각종 공해와 사고,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로 결정하고자 함
B	녹지	○ 신설 - 경관녹지 - A = 12,478㎡	○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습지 지역을 보전 및 개선하고자 경관녹지로 결정하고자 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Ⅰ-1	Ⅰ	10,730	이동면 무림리 1164-5번지 일원	10,730	힐링숙박동
Ⅱ-1	Ⅱ	11,285	이동면 무림리 1164-63번지 일원	11,285	별천지캠핑장

2) 관광편익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Ⅲ-1	Ⅲ	5,558	이동면 무림리 1164-19번지 일원	5,558	에코센터 및 체험관
Ⅳ-1	Ⅳ	6,034	이동면 무림리 1164-110번지 일원	6,034	생태학습장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Ⅰ-1	이동면 무림리 1164-5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Ⅱ-1	이동면 무림리 1164-6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 관광편익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Ⅲ-1	이동면 무림리 1164-1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Ⅳ-1	이동면 무림리 1164-110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생태학습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112) 제 630 호 남 해 군 공 보 2018년 3월 14일

남해군 공고 제2019 - 373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위 치 :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79-5번지 일원

2) 규 모 :

-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변경

: 기정)59,870→변경)92,359㎡(32,489㎡증가)

나.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붙임1>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별첨>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4. 공람·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사항(2가지 방법 중 선택)

1) 남해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단체(개인)는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88,905.7	-	579,488,90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7,341.7	-	357,677,341.7	61.72	
도시지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거지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업지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리지역	소계		136,569,878.7	-	136,569,878.7	23.56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	-	53,325,240	9.20	
	계획관리지역		36,008,586.6	-	36,008,586.6	6.21	
농림지역			153,977,522.0	-	153,977,522.0	26.57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주)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8-244호(2018.07.05.)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변경) 고시」 기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편입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59,870	32,489	92,359	100.0	
	계획관리지역	59,870	-	59,870	64.8	
	보전관리지역	-	32,489	32,489	35.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이동면 신전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735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59,870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1.16)	
변경	10	이동면 신전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735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92,35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1.16)	

□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이동면 신전 개발진흥지구	○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형) 확대 - 면적 : 59,870㎡ → 92,359㎡ (증 32,489㎡)	○ 남해군의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신전숲 일원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코자 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를 확대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일원	59,870	32,489	92,35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1.16)	위치(대표 주소지)정정 당초:735번지 정정:733번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 면적 : 59,870㎡→92,359㎡ (증 32,489㎡)	○기존 신전숲 야영장 일원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청소년 및 가족 단위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 조성을 통해 남해안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870	32,489	92,359	100.0	
관광휴양시설 용지	29,095	21,925	51,020	55.2	
숙박단지	10,680	-	10,680	11.6	
펜션	2,685	감) 1,090	1,595	1.7	
수영장	923	-	923	1.0	
병영막사체험장	1,860	-	1,860	2.0	
연꽃테마원	7,218	-	7,218	7.8	
만남의광장	300	-	300	0.3	
휴게쉼터 및 산책로	825	-	825	0.9	
분수광장	500	-	500	0.5	
판매장 및 홍보체험관	1,300	-	1,300	1.4	
어린이놀이터	705	-	705	0.8	
어울림광장	2,099	-	2,099	2.3	
오토캠핑장	-	2,731	2,731	2.9	신설
청소년야영장	-	20,284	20,284	22.0	신설
공공시설용지	12,132	845	12,977	14.1	
주민활성화센터	1,100	-	1,100	1.2	
오수처리장	240	-	240	0.3	
발전시설	971	-	971	1.0	
주 차 장	3,769	-	3,769	4.1	
안 내 소	240	-	240	0.3	
도 로	5,812	845	6,657	7.2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녹지용지	18,643	9,719	28,362	30.7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	665	5,812	-	-	-	-	-	-	3	665	5,812
	변경	4	812	6,657	-	-	-	-	-	-	4	812	6,657
소로	기정	3	665	5,812	-	-	-	-	-	-	3	665	5,812
	변경	4	812	6,657	-	-	-	-	-	-	4	812	6,657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7.5	국지 도로	472	신전리 862-4	화계리 77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2	7.5	국지 도로	90	신전리 728	신전리 743-3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3	7.5	국지 도로	103	화계리 82-4	화계리 79-4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신설	소로	3	보1	5~7	특수 도로	147	소로3-1호선	신전리 743-6	보행자 전용도로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소로3-보1호선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 원 : 5 ~ 7m - 연 장 : 147m	○ 기 조성되어 이용 중인 보행자도로의 지적을 반영하여 대상지내 도로(소로3-1호선)와 남측 바래길을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1	신전리 733	1,02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01.16.)	
기정	2	주차장2	신전리 733	2,74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3)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태양광 설비	신전리 733-1	971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위치 정정 (토지변경 (분할) 사항 반영)

4) 하수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오수처리장	신전리 733	4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2	오수처리장	신전리 798-11	20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가구번호	가구면적(㎡)			도면번호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Ⅰ	29,095	21,925	51,020	Ⅰ-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500	-	500	분수광장
				Ⅰ-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2,099	-	2,099	어울림광장
				Ⅰ-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705	-	705	어린이놀이터
				Ⅰ-4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825	-	825	휴게쉼터 및 산책로
				Ⅰ-5	이동면 화계리 74번지 일원	300	-	300	만남의 광장
				Ⅰ-6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2,685	감)1,090	1,595	펜션(변경)
				Ⅰ-7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860	-	1,860	병영막사체험장
				Ⅰ-8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923	-	923	수영장
				Ⅰ-9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300	-	1,300	판매장 및 홍보체험관
				Ⅰ-10	이동면 신전리 748-1번지 일원	7,218	-	7,218	연꽃테마원
				Ⅰ-11	이동면 신전리 798-3번지 일원	10,680	-	10,680	숙박단지
				Ⅰ-12	이동면 화계리 79-5번지 일원	-	2,731	2,731	오토캠핑장(신설)
				Ⅰ-13	이동면 신전리 743-3번지 일원	-	11,451	11,451	청소년야영장(신설)
				Ⅰ-14	이동면 신전리 743-1번지 일원	-	8,833	8,833	청소년야영장(신설)

2) 공공시설용지

가구번호	가구면적(㎡)			도면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12,132	845	12,977	II-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5,812	845	6,657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II-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3,769	-	3,769	주차장
				II-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100	-	1,100	주민활성화센터
				II-4	이동면 신전리 733-4번지 일원	240	-	240	안내소 (위치·비고 오기정정)
				II-5	이동면 신전리 798-11번지 일원	240	-	240	오수처리장 (위치 오기정정)
				II-6	이동면 신전리 733-1번지 일원	971	-	971	발전시설 (토지분할사항 반영 위치 정정)

3) 녹지용지

가구번호	가구면적(㎡)			도면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I	18,643	9,719	28,362	III-1	이동면 신전리 752-2번지 일원	18,643	9,719	28,362	녹지 (면적증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 -1 ~ I -5	관광 · 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 -6	관광 · 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 -7	관광 · 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의 나목 자연권수련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Ⅰ-8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Ⅰ-9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Ⅰ-10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Ⅰ-11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라목 그 밖에 유사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Ⅰ-12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Ⅰ-13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에 허용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Ⅰ-14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에 허용되는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2)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Ⅱ-2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Ⅱ-3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Ⅱ-4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60%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Ⅱ-5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Ⅱ-6	공공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Ⅲ-1	녹지 용지	용도	지정용도	• 녹지
			권장용도	
			불허용도	• 건축불허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남해군 공고 제2019-386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인용 법령 및 기관명을 현행화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비대상 한자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법령 및 기관명 현행화 (안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별표1)

기 존		개 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6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한국농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제1조, 제5조제2항,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9년 4월 4일까지

-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94, 팩스 055-860-3727
e-mail : jayjay96@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토석, 사력 등”을 “토석 · 모래 · 자갈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토석, 사력 등”을 “토석 · 모래 · 자갈 등”으로,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중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을 “토석 · 모래 · 자갈을 허가량만큼”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 (군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 <개 2006.4.2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 (골재채취업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 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에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 사업 초당 1세제곱미터이상 사용 시 연액 2십만원 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 (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초당 0.05 ~ 0.5세제곱미터까지 연액 1만원 ○ 초당 0.5세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 4항의 "나"목의 3분의 1 다만, 월 1만세제곱미터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 4항의 "나"목의 4분의 1 다만, 월 1만세제곱미터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토석·모래·자갈 등 --------- ---------- ---------- ----------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 ---------- ---------- ---------- ----------. ③~⑤ (현행과 같음)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생 략) 1.~6. (생 략) 7. 한국농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생 략)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생 략) ②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석·모래·자갈 등 ---------- ----------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이상이거나,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 ② (현행과 같음)